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자 평가 가이드

1.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기준	내 용
	①사고처리 등 안전관리 보고의 적 정성, 안전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2점)	ㅇ안전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ㅇ사고처리 등 안전관리 보고의 적정성

2.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가이드(평가방법 및 확인사항)

구분	세부평가 방법	
안전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관과리비 사용실적을 검토 및 확인 하였는가?	
	안전관리비는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가?	
	공사진행 대비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정도는 적정한가?	
평가준비사항	붙임에 따라 건설진흥법상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기준과, 산업안전	
	보건법 상의 안전관리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을 숙지하여 검토 및 확인에 유의	

3. 평가방법은 발주청별 상이(LH공사 평가방법 참조)

세부기준	배점	A(1.0)	B(0.9)	C(0.8)	D(0.7)	E(0.6)
안전관리비	1	호기 사용	E0/ 01111 11151	100/0111 015	150/01111 0154	15%초과 미달
사용의 적정성		초과 사용	5%이내 미달	10%이내 미달	15%이내 미달	13/2조파 미글

가. 본 가이드는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성적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는 LH공사 및 시설안전공단의 평가 가이드를 참조하였습니다. 평가기관별 세부 평가 배점 및 방법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가이드는 평가의 이해를 돕고, 착공단계 부터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 및 기타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내역
1.안전관리계획의 작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성 및 검토 비용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 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 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 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 변 건축물 등의 피 해방지대책 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 도등 등 4. 공사장 주변의 통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행안전 및 교통소통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을 위한 안전시설의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 6)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 용 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 만 인정된다. 나.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5. 공사시행 중 구조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적 안전성 확보 비용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 . 안 전 관 리 자	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등의 인건비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영 별표3 제
및 각종 업무	41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
수당 등	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1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호 관련)	3)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신고한 경우, 도급인 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 재해예 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 를 포함한다)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다.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2.안전시설비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주의・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시설이 안 (제7조제1항제2 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수리 및 설치·해체 비용 등 호 관련)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 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 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 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 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 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 용되는 통신시설・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 시용 장비 나.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물. 표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 · 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 안전시설물 ※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 드럼 등 다. 기계 · 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 호 관련)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다)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비용 가.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제7조제1항제4 호 관련)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임차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
	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
5. 안전보건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육비 및 행	현심으로모든BSM 배근 인근모든표~, 인근의~ 포기를 기는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사비 등	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
(제7조제1항제5	·해체·운영비용
호 관련)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다. 교육장 대시 구립미승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
	다. 교육당 분당과 원인이 따른 대극기, 회자기, 신화기, 당당 고 등 비품 구입비
	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
	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신문 구독 비용
	※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1)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을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말한다)
	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6.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
건강관리비 등	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제1항제6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기구・약품 등
호 관련)	1) 간식・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
	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
	• 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
	(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3)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
	입비용
	※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 설 설치・해체・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
	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
	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
	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
	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 건설재해예	_

CMAP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방기술지도	
ㅂ]	
8. 본사 사용	가.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
비	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7조제1항제6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호 관련)	병행하는 경우